

임실동중학교 예·결산소위원회 규정

제 정 2019.4.12. 규정 제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임실동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·결산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,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자료수집·조사하여 심사한다.

1.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(단, 추가경정예산 제외)
2.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, 간사는 예·결산담당 교직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, 규모,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④ 학생수 100명 미만이 될 경우, 예·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와 같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